

6.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上 懲戒責任

해사법학과 조영대
지도교수 이경호

海洋安全審判은 국가가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事故를 調査·審判하여 복잡 다양한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을 밝혀내는 일종의 特別行政審判制度로서, 審判의 결과를 海洋事故防止에 관한 國家施策에 반영시켜 유사한 海洋事故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海上交通安全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海洋安全審判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原因을 糾明한 연후에 사람의 행위가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하여 行政上 懲戒處分을 하거나 改善이나 是正의 勸告 또는 命令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 海上交通安全의 確保를 도모하기도 한다.

職務上 故意나 過失로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는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行政上 懲戒責任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懲戒責任은 형식적으로는 行政處分의 일종이어서 刑罰과 성질을 달리 하지만 국가에 의하여 개인의 法益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公法上 制裁일 뿐 아니라 懲戒處分을 당하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生計問題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行政處分이기 때문에 엄격한 制限原理가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上 懲戒對象이 되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부당한 權益侵害를 방지하고자 刑法總則의 一般原則을援用하여 懲戒處分의 制限原理를 모색해 보았는데, 그것은 ① 海洋安全審判에는 하나의 審判節次에 의하여 原因糾明, 過失配分, 海上交通安全에 관한 法規解釋 및 懲戒處分, 勸告·命令 등 다양한 法的, 事實的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이처럼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原因糾明과 過失配分, 懲戒處分, 改善이나 是正의 勸告·命令 등 각각 戒決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因果關係의範圍가 설정되어야 하고 ②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부당한 權益侵害를 방지할 수 있도록 懲戒對象이 되는 行爲는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 및 責任性이 엄격하게 解釋되어야 하며 ③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는 이들의 완전한 職務遂行을 강제하여 海上交通安全을 도모하고자 하는 痣正的, 豫防措置의 行政處分이기 때문에 懲戒量定을 할 때에는 결과의 대소보다는 행위의 경중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④ 海洋安全審判制度의 주된 목적이 海洋事故의 재발방지를 위한 原因糾明에 있다 하더라도 海上交通參與者에 대한 규제 역시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므로 지나치게 濫情主義에 치우쳐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處分制度가 形骸化되어서는 것도 피하여야 한다 ⑤ 海洋事故는 海上特有의 危險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非難可能性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선원에게는 여기서 살펴본 懲戒責任 외에도 刑事上, 民事上 및 勞動契約上의 責任이 중첩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감이 없지 않다. 선원의 過失은 곧 자신의 生命·身體에도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굳이 刑罰로 威嚇하지 않더라도 注意를 태만히 할 우려가 적다 할 것이므로 非難可能性이 매우 높거나 被害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海洋事故에 따른 刑罰은 行政懲戒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